

의안번호	2212186
의 퇴 인	권향엽 의원
회 답 일	2025. 12. 1.
추계번호	25A4348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철강산업 관련 동향 및 기술개발 현황 조사와 통계 작성,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수반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3,100만원, 2031년 7,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억 1,500만원(연평균 8,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60	—	—	—	—	60	12
철강산업 관련 동향 등 조사 및 통계 작성(안 제7조 및 제8조)	60	60	60	60	60	300	60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11	11	11	11	11	55	11
합 계	131	71	71	71	71	415	83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하여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의 설치·확충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1항) 기본계획에는 ①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본방향, ②철강산업의 동향, 기술개발 현황 및 미래 전망, ③철강산업의 국제 교역 및 관세 현황과 국내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7조 (철강산업의 동향 등 조사 및 미래 전망 예측)	정부는 매년 철강산업에 관한 국제적·경제적·사회적 동향과 기술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미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8조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제1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9조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과 관련하여 ①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상황 점검 및 이행실적 평가, ②철강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 비전 수립, ③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진흥위원회를 둔(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제2항)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제3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철강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됨(제4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7	안 제11조 (그린스틸기술 ¹⁾ 에 대한 지원 등)	정부는 철강사업자에게 ①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②수소환원제철 기술 운용을 위한 청정수소 생산 및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2조 (그린스틸기술의 조세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스틸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그린스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철강산업과 관련된 기술

나. 그 밖에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3조 (그린스틸클러스터의 지정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철강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등에 대하여 그린스틸클러스터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클러스터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3항) 1.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클러스터 지정 취지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클러스터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항에 따라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함.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항) 산업통상부장관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로 ①지방자치단체, ②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 ③그 밖에 클러스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지정(제5항) 사업시행자는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자금 조달 계획 등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6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5조 (클러스터 육성시책)	정부는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클러스터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클러스터 육성시책에는 ①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 ②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설치, ③클러스터 내 청정수소의 공급 확대와 생산시설(청정수소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포함)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정부는 클러스터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11	안 제16조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① 「화학물질 관리법」 제23조²⁾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②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³⁾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⁴⁾에 따른 등록의 면제 확인,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⁵⁾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 등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및 각 호 생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8조 (클러스터의 산업기반 시설 설치 및 전기 공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 공급, 클러스터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도로 등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19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에서의 ①산업집적 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②부지 조성 및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③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도입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20조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조성·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내 수소연료공급 시설, 청정수소 생산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5	안 제21조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조성·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22조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23조 (클러스터 토지의 매입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28조 (철강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철강산업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9	안 제29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제26조 ⁶⁾ 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27조 ⁷⁾ 에 따른 철강전문기업, 제28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하여 ①재정 및 금융 지원, ②기술·인력·금융·경영·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과견·알선, ③특허·기술 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0	안 제32조 (실증기반의 확충)	정부는 제34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1	안 제33조 (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①시설 구축·운영, ②시설이나 장비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③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철강산업 관련 기술에 대하여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2	안 제34조 (협력모델의 발굴)	정부는 협력모델(철강산업 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35조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공동기술개발, ②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 ③기술 이전 및 연구개발·생산을 위한 투자 등과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6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총매출액 중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2. 총매출액 중 철강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철강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5. 그 밖에 철강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안 제27조(철강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철강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3	안 제36조 (대·중소·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철강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또는 공급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24	안 제37조 (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정부는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5	안 제38조 (철강산업의 보호 등)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6	안 제40조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정부는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하여 ①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②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③철강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철강사업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27	안 제41조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28	안 제43조 (국제협력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9	안 제44조 (세제 및 금융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진흥과 탈탄소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30	안 제47조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정부는 철강산업의 진흥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1항) 정부는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①철강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 ②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 ③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31	안 제48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32	안 제50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제3항)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3	안 제51조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철강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제1항) 철강산업진흥센터는 철강산업 시장 및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철강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 통상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철강산업과 관련된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제2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34	안 제52조 (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제1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①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③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8)에 따라 철강산업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등으로 함(제2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①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의 설치·확충, ②그린스틸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③클러스터 육성정책 실행을 위한 사업 등으로 함(제3항) 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운영(제4항)	의무규정
35	안 제5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안 제5조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3	안 제6조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실행계획의 경우 각 부처가 기존 예산 내에서 추진하여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4	안 제7조 (철강산업의 동향 등 조사 및 미래 전망 예측)	○	—
5	안 제8조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6	안 제9조 (철강산업진흥위원회)	○	—
7	안 제11조 (그린스틸기술에 대한 지원 등)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산업통상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녹색철강기술에 대한 지원,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 등의 지원,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 재원 투입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워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12조 (그린스틸기술의 조세 감면 등)	×	
9	안 제13조 (그린스틸클러스터의 지정 등)	×	
10	안 제15조 (클러스터 육성시책)	×	
11	안 제16조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18조 (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전기 공급)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산업통상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녹색철강기술에 대한 지원,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 등의 지원,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 재원 투입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워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13	안 제19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	
14	안 제20조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	
15	안 제21조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	
16	안 제22조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	×	
17	안 제23조 (클러스터 토지의 매입 및 임대)	×	
18	안 제28조 (철강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	
19	안 제29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	
20	안 제32조 (실증기반의 확충)	×	
21	안 제33조 (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	
22	안 제34조 (협력모델의 발굴)	×	
	안 제35조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23	안 제36조 (대·중소·중견기업의 공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	
24	안 제37조 (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	
25	안 제38조 (철강산업의 보호 등)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6	안 제40조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산업통상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녹색철강기술에 대한 지원,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 등의 지원,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 재원 투입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워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7	안 제41조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	
28	안 제43조 (국제협력 등의 지원)	×	
29	안 제44조 (세제 및 금융지원)	×	
30	안 제47조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	
31	안 제48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32	안 제50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	
33	안 제51조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의 설치)	×	
34	안 제52조 (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35	안 제54조 (권한의 위임·위탁)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재 산업통상부는 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철강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을 기 실시 중임

[표 2] 철강산업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산업통상부 소관)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내역명	회계·기금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안	비고 (제정안 관련 규정)
1	전기로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	기후대응기금	2,584	2,584	-	안 제11조(그린스틸 기술에 대한 지원 등), 안 제40조(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2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	기후대응기금	5,178	5,178	-	
3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 철강분야	기후대응기금	34,722	20,747	27,045	
4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R&D)	기후대응기금	-	-	50,146	
5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수소환원제철공정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4,000	-	-	
6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12,917	11,625	-	안 제40조(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7	소재부품기술개발 - 철강분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39,850	40,700	(미정)	
8	철강·금속디지털전환 (DX)실증센터구축	일반회계	2,800	2,240	3,360	
9	자동차 핵심부품용 탄소 배출 저감 특화 철강 판재 기술개발사업(R&D)	기후대응기금	-	-	4,500	
10	국제부담금 - 철강글로벌포럼	일반회계	62	33	35	안 제43조 (국제협력 등의 지원)
11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 철강분야	일반회계	1,000	1,500	1,500	안 제47조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사업의 예산 투입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각 규정별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기준, 예산 투입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계를 위한 사업량 및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그린스틸기술에 대한 재정 및 조세 지원, 그린스틸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지원 등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①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②철강산업 관련 동향, 기술개발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안 제7조 및 제8조), ③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에 따른 재정소요만을 추계함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비용추계 대상은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함
-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할 때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2027년에만 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유사 연구사례로는 “EU 탄소국경제도 도입에 따른 철강산업 공급망 영향 평가”(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4,545만원), “철강산업 글로벌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7,431만원) 등이 있음

[표 3]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60	—	—	—	—	60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철강산업 관련 동향, 기술개발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안 제7조 및 제8조)

- 비용추계 대상은 “철강산업 관련 동향 및 기술개발 현황 조사와 통계 작성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동 조사 및 통계 작성은 기본계획과 실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의 조사 및 통계 작성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할 때 매년 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유사 연구사례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계획 조사 분석”(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1년, 4,840만원), “2019 철강 산업경쟁력조사”(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8,182만원) 등이 있음

[표 4] 철강산업 관련 현황조사 통계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철강산업 관련 동향, 기술개발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안 제7조 및 제8조)	60	60	60	60	60	300	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 비용추계 대상은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관련 비용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금액으로 함
 - 안 제9조제2항9)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는 정원 20명의 과반에 해당하는 11명으로 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할 경우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9) 안 제9조(철강산업진흥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5]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11	11	11	11	11	55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사업 추진 및 예산 투입 계획 등에 따라 향후 실제 소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